

## 【 사회복지현장 간접실습에 관한 동의서 】

목적 :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

\*2020.5.20. 사회복지협회 공지사항에 준함

(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-1916, 2021.05.18. 적용기한 연장 공고)

(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-4226, 2021.11.25. 완화기준 유지 공고)

(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-1826, 2022.05.23. 이수기준 변경 통보)

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습 인정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직접실습과 간접실습을 아래의 시간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실습기관과 학습자는 동의한다.

(단, 간접실습은 40시간까지만 인정 - 120시간 대상자 기준)

직접실습 ( \_\_\_\_\_ )시간, 간접실습 ( \_\_\_\_\_ )시간

20 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실습기관 : \_\_\_\_\_ (직인)

학 습 자 : \_\_\_\_\_ (인)

교육기관 : 대전충신평생교육원 (직인)

